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제정 2005. 3. 1
개정 2005. 9. 1
개정 2006. 1. 11
개정 2006. 2. 21
개정 2009. 8. 31
개정 2009. 11. 9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3. 1
개정 2015. 8.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유능한 목회자와 교육자 양성 및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본교는 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장과 그 하부조직으로 사무처, 교무처, 기획처, 학생처 등과 사무를 관장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학위과정)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과정(이하 “석사학위 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두며, 필요한 경우 박사 학위 과정을 둘 수 있다.

제4조(정원) 본교의 학생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총50명으로 하며,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음악학과 정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입 학

제5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본교의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외국인 학생) ①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8조(입학전형방법) 입학전형은 필답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여 필답고사 성적순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입학지원 서류) 본교 석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2. 대학 성적 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10조(편입학) 본교의 석사과정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정원 중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 ① 본교 또는 타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했던 학생
- ② 관할청 령이 정하는 위탁 학생
- ③ 외국에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11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 할 때에는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당해연도 입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은 위 3년의 기간에서 예외로 한다.

- ②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선발고사를 면제 할 수 있다.
- ④ 제적 및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 할 수 있다.
- ⑤ 재입학 허가 시 학기 인정은 제적 당시의 학기 이하로 한다.

제 3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12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 또는 재학생은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납입금 납부로서 완료된다.

제13조(수강신청)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매 학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수업연한·재학연한·수업일수·교과과정·학점·성적 및 수료

제14조(수업연한) ① 본교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으로 한다.

- ② 학칙 제19조에 정한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서는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로 단축 할 수 있다.
- ③ 편입생은 학칙 제20조 2항의 학점을 인정받을 경우 수업연한을 6개월 이내로 단축 할 수 있다.

제15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입학자는 전적이

간을 통산한다. 다만, 총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삽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수업일수 및 수업)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수업을 진행 할 수 없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②매 학년은 3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하며, 학기는 3월부터 8월과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2학기를 기본으로 하되, 방학기간 중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정기휴업일은 법정 공휴일과 총회에서 정한 교종 공휴일, 개교기념일로 하며, 하계휴가, 동계휴가, 임시휴업일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수업은 주간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야간 수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09.11.9.)

제17조(교과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이수단위)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동안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19조(이수학점) 본교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총24학점이상으로 하고, 논문 선택자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총30학점(학위논문6학점포함)이상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위논문 학점 취득 요건을 면제하되 논문대신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2. 음악학전공 이수자의 학위청구논문은 총장이 따로 정한 졸업연주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선수과목의 학점취득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0조(타 대학원 학점 인정) ①전공과목으로 그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기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교과과정에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본교에서 인정한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편입하였을 때는 9 학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과정의 수료) 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② 수료는 재학년한 동안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인정한다.

제22조(시험)① 시험은 각 교과목별로 정기로 기말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추가 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업일수 4분의 1을 결석한 학생은 해당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3조(성적의 평가) 학업 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7-100	4.3
A0	94-96	4.0
A-	90-93	3.7
B+	87-89	3.3
B0	84-86	3.0
B-	80-83	2.7
C+	77-79	2.3
C0	74-76	2.0
C-	70-73	1.7
D+	67-69	1.3
D0	64-66	1.0
D-	60-63	0.7
F	59이하	0
P	합격	불계

제24조(이수학점인정) 학점은 D0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은 본 학칙 제 26조에 따른다.

제25조(수료증서수여) 본교에서 규정된 학기 이상을 수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으나 종합시험 및 신학과는 성경 종합 고사, 그 외 학과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는 석사과정 수료를 인정하고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수료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학위 수여

제26조(학위취득자격) 석사과정의 학위 취득을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수학점의 평균 평점

가. 신학과 : 학칙 제 19조 제1항에 규정된 학점이상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B0)이상인 자

나. 사회복지학과 : 학칙 제 19조 제 1항에 규정된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B0)이상인 자

다. 음악학과 : 학칙 제 19조 제 2항에 규정된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B0)이상인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신학과는 성경종합고사, 그 외 학과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제27조(학위 수여 및 취소) ①제 2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학위논문심사에 합격 또는 학위취득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학위 종별)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신학과 : 신학석사
2.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석사
3. 음악학과 : 음악학 석사

제6장 휴학·복학·제적·퇴학

제29조(휴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0이상수강 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할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등록기간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고 등록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을 필한 후에 휴학할 수 있다.

제30조(복학)①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로서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에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 할 수 있다.

②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의 경우에도 수학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복학을 유예시킬 수 있다.

제31조(제적)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 학기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재학년한을 초과한자
4. 무계출 결석이 30일을 초과한 자

제32조(퇴학)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이유를 써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공개강좌·연구생

제33조(공개강좌)①본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식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공개강좌의 개강)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과 장소, 기타

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5조(연구생 자격 및 입학) ①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연구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연구생이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연구생 수강)연구생은 총장으로부터 승인된 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고, 등록 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연구실적 증명서) 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1-2)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장 지도교수 및 지도위원

제38조(지도교수) 학생의 과정이수 및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제39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지원 및 진로지도

제40조(학생자치기구)① 학생들이 창의적인 자치능력으로 지도력 배양을 위하여 학생자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과 학술 및 종교간 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②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도 협의하기 위하여 학생 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 지도 위원회와 학생자치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40조의 2(장애학생의 지원) 장애학생이 학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5.08.01 신설).

제41조(학생진로지도)① 졸업생 전원에 대하여 기독교 교역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격 취득자는 자신의 소양을 참작하여 기독교 산하의 선교 사회복지 시설에 나가 활동 할 수 있도록 한다.

②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애로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상담제도와 학년 지도 교수제를 운영한다.

제10장 종합시험

제42조(응시자격)①다음의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B) 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 응시할 수 있다.

제43조(종합시험 시기)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44조(시험과목) 시험은 전공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1장 학위논문

제46조(논문계획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47조(논문 제출 및 심사)①종합시험에 합격한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서와 소정의 심사료를 첨부하여 심사용 논문을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받아야 하며, 학위논문 작성 요령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출된 학위 논문은 총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제48조(학위취득자격시험)①제 26조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자는 학위취득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학위취득자격시험은 매학기 공고한 기간에 실시하며, 응시지원 시 지정된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학위취득자격시험의 시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9조(합격기준)①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논문심사와 논문 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거쳐 논문 합격여부를 의결한다. 논문심사의 의결은 심사위원 3인중 2인의 찬성에 의한다.

제12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50조(장학금 및 연구비 보조) 본교의 대학원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1조(장학금 신청)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지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수혜대상자 선정) ① 장학생의 선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선정기준을 정하여 결정한다.

②장학금 및 연구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3장 대학원위원회

제53조(대학원위원회 구성) ①본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대학원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의장이 된다.

제54조(심의, 결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학칙,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발의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학과 간의 업무 협조 및 조정
6. 기타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5조(소집 및 의결) ①대학원위원회는 총장 또는 전체교수 1/20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대학원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휴직 또는 연구년 기간 중인 교원은 재적 교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56조(회의록) 대학원위원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4장 보 칙

제57조(학칙개정)①이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절차를 거쳐 대학원위원회 2/3이상의 결의를 얻어 개정한다.

②개정된 학칙은 개정 즉시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8조(시행세칙)본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 (자체평가)①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9. 11. 9)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11.9)

부 칙

1. ① 본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① 본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내용 변경
3. ①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정원), 제14조(수업연한), 제16조(수업일수 및 수업), 제18조(이수단위), 제19조(이수학점), 제20조(타 대학원 학점 인정), 제26조(학위취득자격), 제39조(교원의 교수시간)내용 변경
4. ① 본 개정 학칙은 2006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정원), 제26조(학위취득자격), 제28조(학위 종별)내용의 변경
5. ①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정원), 제26조(학위취득자격), 제28조(학위 종별)내용의 변경
6. ① 본 개정 학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수업일수 및 수업)4항 야간수업 실시 추가
③ 제49조 자체평가에 관한 내용 신설
7. ① 본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재입학), 제15조(재학년한)내용 변경
8. ① 본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위원회를 교수회로 명칭 변경
9. ①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8조, 제17조, 제27조, 제34조, 제43조, 제52조, 제13장 제목,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의 교수회를 대학원위원회로 명칭 변경
③ 제27조 2항 학위 취소에 관한 내용 추가
10. ①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9장 제목 수정 및 제40조의 2항(장애학생의 지원)신설

【별지서식 1-1】
(논문선택자)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 학과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의 합격하여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위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논문 :

20 년 월 일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별지서식 1-2】

(학위취득자격시험)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 ○○○ 학과를 이수하고
○○○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위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별지서식 1-3】

석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원 대학교 학위 과정에서 년 월간

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 하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학위) 성명 (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정	2005.	3.	1
개정	2009.	1.	1
개정	2010.	3.	1
개정	2012.	9.	1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1
개정	2015.	3.	1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학칙시행세칙은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에 규정한 내용의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시험

제 2조 (응시자격)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① 입학시험

-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 2) 관할청이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자

② 편입학시험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제 3조 (응시자 구비서류)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학시험

- 1) 입학원서
- 2) 대학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 3) 대학 전 학년 성적 증명서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5) 컬러사진 (3X4) 3장
- 6) 당회장 추천서(목사는 재직증명서), 자기소개서 각 1부(신학과 지원자에 한함)-2010년 3월 수정

② 편입학시험

- 1) 입학원서
- 2) 대학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 3) 대학 전 학년 성적 증명서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5) 컬러사진 (3X4) 3장
- 6) 당회장 추천서(목사는 재직증명서), 자기소개서 각 1부(신학과 지원자에 한함)

제 4조 (시험과목 및 내용)

- ①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대학 또는 대학원 학업성적을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 ② 면접·구술시험 : 지원 전공에 대한 지식과 연구능력, 학문에 대한 열의 등을 구술문답으로 시험한다.
- ③ 실기시험 : 음악학과의 지원자 중 경우에 따라 지원 전공에 대한 학력을 실기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조 (합격자 전형절차)

- ①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요강을 확정하고 각 학과주임교수에게 이를 통보한다. 학과별 선발인원 배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입시전형 위원은 각 학과 교수로 구성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③ 교무처장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

제 6조 (사정원칙)

사정원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조 (특별전형 및 편입학전형)

특별전형 및 편입학에 대한 전형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8조 (합격자발표)

합격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고 합격증서를 발부한다.

제 9조 (입학등록)

합격자는 소정기간에 입학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10조 (합격취소)

총장은 합격자중 학력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자 또는 등록 미필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3장 등록. 휴학. 편입학. 재입학. 복학

제11조 (등록의 종류)

각 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입학등록 : 신입생
- ② 재입학등록 : 재입학생
- ③ 학기등록 : 재학생
- ④ 연구등록 : 과정 수료 후 학위취득을 위해 지원하는 학생

제12조 (휴학)

- ① 휴학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상 요양기간 동안 휴학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군 입대로 인한 휴학은 군복무기간동안 휴학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그 외의 휴학인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⑤ 학기 개시 일을 지나 소정일 이후에 휴학하는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입학)

- ① 편입학자의 학기 인정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편입학자의 학점 인정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재입학)

- ① 본교의 학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 할 때에는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당해연도 입학 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 ②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선발고사를 면제 할 수 있다.
- ④ 제적 및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 할 수 있다.
- ⑤ 재입학 허가 시 학기 인정은 제적 당시의 학기 이하로 한다.

제15조(재학년한)

재학년한은 수업년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다만, 총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삼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행정실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해당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17조 (교과목 이수)

- ① 각 과정의 학생은 다음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전공필수 : 9 ~ 18학점
 - 2) 전공선택 : 6 ~ 15학점
- ② 전공과목은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학점까지 타 학과 개설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 단 유사교과목 통합운영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국내.외 학술교류 협정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으로 한다.
- ④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0이상은 반드시 우리 대학원 소속 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교과목설정 및 변경)

과목설정은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확정하며, 설정된 교과목은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1년 이내 교과목 변경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선수 또는 보충과목)-삭제

제20조 (선수 또는 보충과목 지정 및 수강절차)-삭제

제21조 (선수 또는 보충과목 이수시기)-삭제

제22조 (수강교과목 신청 및 시기)

- ①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수업시간이 동일교시에 중복된 교과목은 이종으로 수강 신청할 수 없다.

제23조 (수강교과목의 포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기말 시험 개시 전에 수강교과목 포기원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교과목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① 교내·외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 ② 박사학위 취득 후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③ 위 항 이외의 자로 학과 교수 전원이 합의로 추천한 자

제25조 (교과목개설 및 담당교수제청)

- ① 학기당 개설 교과목수는 3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 과목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학과주임교수는 개설교과목과 교과목 담당교수를 1학기 전년도 12월 말, 2학기는 당년도 6월말까지 행정실에 제출한다.
- ③ 학과주임교수는 신규강사를 교과목 담당교수로 제청할 경우 이력서 및 소정의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한다.

제26조 (담당교과목의 제한)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 교과목수는 3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타 학과 담당교과목 및 예체능계 교수의 실기 담당교과목은 과목을 추가 담당할 수 있다.

제27조 (강의계획서제출)

교과목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해당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행정실에 제출한다.

제5장 시험 및 성적

제28조 (교과목성적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표는 종강 후 3주 이내, 전산입력 후 출력물을 행정실에 제출한다.

제29조 (성적의 공시 및 정정)

- ① 성적평가결과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4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한하여 서면으로 성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성적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교수는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소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④ 성적은 성적정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단, 전산입력착오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답안지 등의 의해 증빙서류를 첨부한 교과목 정정원을 제출하여 교과목 주관 학과 학과주임교수와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 ⑤ 교과목 담당교수는 시험답안지, 과제보고서 등 성적 평가자료를 3년 보관하여야 하며, 출석부는 행정실에 제출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제30조 (재수강)

- ① 성적평가가 F인 교과목은 동일교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첫 수강 시 학점은 말소되며,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1조 (수료증의 발급)

각 과정 수업연한까지 정규등록을 마치고 각 과정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32조 (학점인정)

본교에서 인정한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편입하였을 때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 (시험부정행위의 징계)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한다.

- ① 당해학기 해당 전 과목 성적무효 : 대리시험자 및 대리시험 의뢰자
- ② 당해학기 해당과목 성적무효 : 기타 시험부정행위자 및 감독자 지시에 불응한 자

제6장 학사지도

제34조 (학과주임교수)

석사과정 학과주임교수는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겸임하며 학과의 학과주임교수는 해당학과 교수회의 추천으로 교무처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제35조 (학과주임교수의 임기 및 직무)

학과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학과주임교수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학과주임교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① 각 과정 학사절차의 관장
- ② 학과교수회의 소집 및 관장
- ③ 학위논문지도교수 및 학위논문심사위원의 제청
- ④ 기타 학과내규 시행에 관한 사항

제36조 (학과교수회의)

- ① 구성 : 학과교수회의는 학과소속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소관사항
 - 1. 학과내규제정, 개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소집 : 학과교수회의의 소집은 대학원 및 소속교수의 요청이 있을 때 학과 학과주임교수가 소집한다.
- ④ 의결 :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은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②항 1호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⑤ 보고절차 : 각 학과주임교수는 각 과정 관장업무와 관련된 의결사항을 소속교수 전원의 날인을 거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 ⑥ 학과내규 : 학과교수회의의 학과 특성에 따라 다음사항을 내규로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1. 학위과정별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 2. 종합시험과목에 관한 사항
 - 3. 입학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⑦ 학과내규의 변경 : 학과내규는 공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변경 할 수 없다.

제7장 정원 외 전형

제37조 (전형절차)

정원 외 해당자의 전형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에 의해 전형 할 수 있다. 단 전형 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장 연구생

제38조 (전형위원 및 절차)

각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자 중 적정인원을 선발시험을 거쳐 전형하며, 전형위원은 해당학과 입시전형위원이 겸한다.

제39조 (연구생 지원서류)

각 과정 연구생의 지원서류는 소정의 지원서와 최종학력증명서로 한다.

제40조 (연구생의 등록)

연구생은 전형에 합격한 후 지정한 기일 내에 연구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연구생의 실적증명발급 등)

연구생의 교과목연구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증명을 발급하고 일반적 학적사항은 본과정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장 성경종합고사 및 외국어시험

제42조 (시험과목, 시간 및 출제내용)

- ① 시험과목은 성경종합고사 및 외국어시험이며 시험시간은 100분으로 한다.
- ② 성경종합시험의 출제는 신학 연구에 필요한 신구약성경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한다.
- ③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며 출제는 각 전공분야 연구에 필요한 일반적 외국어 독해력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한다.

제43조 (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성경종합고사 및 외국어시험은 4월,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회수에

제한 없이 재학 중 매 학기 응시할 수 있다.

제44조 (시험위원)

시험위원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구성한다.

제45조 (합격기준)

- ① 성경종합고사와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공인된 영어능력 시험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종합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국제언어교육원의 대학원 영어과정 이수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제언어교육원의 대학원 영어과정 이수자의 평가는 합격, 불합격으로 정한다.
- ④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장 종합시험

제46조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각 과정 수료학점을 이수하였거나, 기취득학점과 해당학기 수강과목의 학점합계가 각 과정 수료학점 이상인 자여야 한다.

제47조 (시험과목, 시간 및 출제내용)

- ① 종합시험은 학과가 지정한 전공(전공필수, 전공선택포함) 2과목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시간은 각 80분으로 한다.
- ② 종합시험의 출제는 전공분야 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수준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한다.

제48조 (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종합시험은 매학기 1회 시행하며 응시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49조 (출제위원 및 출제)

- ① 출제위원은 교내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출제위원의 1인당 출제과목 수는 1과목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거쳐 2과목까지 허용할 수 있다.
- ③ 출제위원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선정한다.

제50조 (시험진행 및 채점)

종합시험과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51조 (합격기준)

각 과목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11장 학위논문

제52조 (학위논문지도교수)

- ① 석사과정 논문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제3학기 이내에 학과주임교수가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② 학.연.산 협동과정의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2명의 지도교수를 공동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53조 (학위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자여야 한다.

- 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전임교수 이상
- ②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 소지한 교원
- ③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 ④ 위 각항 이외의 자로서 학과교수 2/3이상의 합의로 추천 한다.

제54조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지도 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승인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는 중한 질병,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총장이 승인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사과정의 경우 논문제출 당해 학기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 ③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과 학과주임교수는 1주 이내 새 논문지도교수를 총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제55조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각 학과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과가 정한 학위청구논문 체제와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 (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제출자는 다음 각 항 해당자여야 한다.

- ① 각 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B0(3.0)이상인 자
- ② 외국어(성경)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57조 (학위논문 신청절차)

- ① 석사 3학기 학생은 해당 학기 초에 연구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② 학위논문 제출은 해당학기 지정기일 내에 다음 구비서류를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신청서 1통
 2. 심사용 논문 3부

제58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①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석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으로 하되, 최소한 교내 교원 1명은 배정되어야 한다. 단, 학.연. 산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각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위원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2013년 5월 수정)
- ③ 각 학과주임교수는 해당 학과에서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자격 요건을 갖춘 논문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 후보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다른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59조 (학위논문심사위원 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심사위원 자격은 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제60조 (심사위원 교체금지)

- ① 학위논문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이 중한 질병,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 ② 논문심사위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과주임교수는 5일 내에 새 논문심사위원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 ③ 논문 심사위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심사 일정상 새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대상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하는 심사위원은 1명에 한다.

제61조 (학위논문예비심사방법)

- ① 석사과정 학과주임교수는 학위논문을 접수한 즉시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심사일정을 통지한 후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 ②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 필요한 부분, 역본,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전반적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 심사 보류를 지시할 수 있다.

제62조 (학위논문 본 심사)

- ① 본심사는 석사학위 논문예비심사가 종료된 후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진행된다.
- ②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수정,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 ③ 논문의 내용과 체제를 검토한 후 구술시험을 질의응답 형태로 실시한다.

제63조 (학위논문 합격판정)

- ① 석사학위논문 합격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학위논문 본심사와 구술시험에서 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로 한다. 단, 청구논문의 성적을 기재할 때에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②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경우 합격판정은 교체대상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학위논문 본심사와 구술시험에서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64조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① 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정한 기일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 종료 후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수합하여 학위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65조 (학위논문의 재심 및 학위논문 제출 연한)

- ① 학위논문 본 심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와 제66조 제3항에 정한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재심은 해당학기 경과 후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학연한 내에 재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은 과정 수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기간은 제외한다.

제66조 (학위논문인쇄본 제출)

- ① 논문제출자는 학위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인쇄본 및 디스켓(또는 CD ROM)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인쇄본 3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합격 판정을 받은 학위논문 인쇄본에 날인하여야 한다.
- ③ 학위논문인쇄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위논문 합격판정을 무효로 한다.

제12장 학점 교환

제67조 (학점교환 과목)

학점교환 교과목은 타대학원에서 당해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하며, 본 대학원에서 당해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타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68조 (교환 이수 학점)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환 학점은 매학기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69조 (성적 인정)

학점교환제에 의해 타대학원에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인정한다.

제70조 (수강신청)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환제에 의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① 타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교과목을 결정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수강교과목의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교과목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수강한다.

제71조 (준수사항)

타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그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2조 (외국대학 교환학생 학점교환)

외국대학 교환학생의 학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학위취득시험

제73조 (응시자격)

- ① 학위취득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
 2. 최종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취득
 3. 외국어(혹은 성경종합)시험 합격
 4. 종합시험 합격
- ② 전체 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74조 (응시절차) 학위취득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료와 학위취득자격시험 응시신청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실시방법)

- ① 학위취득자격시험은 전공영역 연구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 중에서 2과목을 부과한다.
- ② 학위취득자격시험 과목은 교과과정에 맞춰 해당 학과주임교수가 정한다.
- ③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
- ④ 불합격한 과목은 과정수료 후 재응시 할 수 있으며, 학위취득자격시험 응시절차에 따른다.
- ⑤ 시험 출제 위원은 해당 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